

윤리규정

제정 : 2018.01.22.

개정 : 2022.11.01.

2023.07.01.

윤 리 헌 장

우리 (주)현대하이텍 임직원은 투명경영, 윤리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고객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받고 존경 받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가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 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을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가치창조와 이윤창출을 통해 회사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건전한 이윤창출 활동을 통하여 고객 중심경영을 실현 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주)현대하이텍 대표이사

(주)현대하이텍 임직원 일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주식회사 현대하이텍 (이하 “회사”)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회사의 책임경영, 윤리경영 및 지속 가능한 경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여하한 윤리규정을 수립하여 임직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이하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 1)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이하 “임직원”)에 적용된다.
- 2) 본 규정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정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제 3 조 윤리규범의 운영

- 1) 본 윤리규범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직무윤리실천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2)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야하며,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예시에 따라 결정한다.
- 3) 임직원은 본 윤리규정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4 조 기본윤리

- 1)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
- 2) 임직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 3)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제 5 조 사명의 완수

- 1) 임직원은 현대정신과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사회법규 및 회사의 업무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2)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3)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제 6 조 공정한 직무수행

- 1)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외 공무원을 비롯한 기존 또는 향후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 4)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7 조 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

- 1) 임직원 상호간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 2) 임직원 상호간 금전 대차, 보증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된 범위와 방법으로 허용한다.

제 8 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 1)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임직원은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예방과 실천에 적극 협조한다.

제 9 조 회사자산의 보호

- 1)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 2)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 3) 일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 10 조 내부자거래 및 정보활용

- 1)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 가족 또는 제3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 된다.
- 2) 회사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혹은 당해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련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임직원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1 조 근로환경 및 안전관리

- 1)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2) 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 12 조 고객안전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및 유통, 판매 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제 13 조 품질 및 의견수렴

- 1)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제 14 조 제조물 책임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

제 4 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제 15 조 평등한 기회

- 1) 적절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
- 2) 협력회사의 선정은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 16 조 공정한 거래

- 1)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2)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3)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4)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제 17 조 상호발전의 추구

- 1)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 5 장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제 18 조 국내외 법규준수

- 1)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국내외 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범을 준수한다.
- 2) 공명정대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부패방지관련 법령, 국제협약 및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부패방지법령준수지침을 준수한다.
- 3)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 4)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배하는 부조리를 철저히 배격한다.

제 19 조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

- 1)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의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 2)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3)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 5 장 임직원 존중

제 20 조 임직원 존중

-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 2)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 3) 회사는 직장 내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행위를 금지하며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게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4)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21 조 공정한 대우

- 1)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2) 임직원의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학력, 연령, 문화, 종교, 장애, 정치적 성향 및 개인적 취향 등의 기타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 22 조 인재육성

- 1)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질을 존중하고 인재육성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2) 직원의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 23 조 안전한 작업환경

- 1) 회사는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게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의 시행)

- 1) 이 준수규정은 2018 년 1 월 22 일 부로 제정, 시행한다.
- 2) 이 준수규정은 2022 년 11 월 1 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 3) 이 준수규정은 2023 년 7 월 1 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